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9-281호 (사건번호 :)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 대표이사

의결연월일 2021. 11. 24.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는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6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0.6.11.~ 2020.7.1.)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침해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함)은 피심인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피심인이 열람한 내역, 이용약관 동의일자, 검진 예약 및 취소 일자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20. 5. 15)하였으나, 피심인은 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실조사가 시작된 이후('20.6.11) 신고인에게 열람 조치('20.6.19)를 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11.0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인지한 후 신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신고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법령에 정한 기한(10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가 진행되자 열람 조치를 한 것은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생성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인이 열람을 요구한 약관 동의 일자, 검진결과 조회 이력 등은 피심인이 직접 생성한 정보로 이에 대한 열람 요구 답변의 책임은 피심인에게 있다.

또한, 피심인은 위탁사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하여 신고인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위탁사의 지시는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규정된 열람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로 답변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없다고 판단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president from the highest stall		- 3	마태료 금역	24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처.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10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1. 일반기준

-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조사 중에 열람 조치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나.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3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태료 금역	액 (단위	: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법 §35③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열람 거절	600	-	△300	3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2항제10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11월 24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9-282호 (사건번호 :)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	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시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1. 24.

주 문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의료기관으로서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3.9.에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침해신고가 접수된 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2021.3.31.~2021.4.23.)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열람 거절의 사유를 알리지 않은 행위

2021.2.24. 신고인이 병원을 방문하여 본인의 CCTV 자료('21.2.4.자 영상 정보) 열람을 위해 청구 양식을 요구하고 환자정보 접속기록과 진료차트 수정 내역을 구두로 열람을 요청하면서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심인은 서면으로 청구하라고 응답하였고 열람청구에 대해 변호사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심인은 개인영상정보 열람과 관련하여 보관기간 내에 사전 연락 후 서면으로 청구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다른 개인정보 열람은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영상정보 열람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명하였다.

2021.3.9. 신고인은 피심인이 10일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 열람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이에 피심인은 CCTV에 다른 정보주체의 영상도 있어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열람할 수 없고 서면으로 청구할 것을 안내했으나 서면으로 열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열람청구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러한 거절 사유를 알린 사실은 없으며, 영상정보 보관 기간이 약 14일이고 신고인이 요청한 영상정보('21.2.4.)는 요청 당시('21.2.24.) 이미 삭제되어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하였다.

2021.5.14. 피심인은 로그기록 및 CCTV 영상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청구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서면 접수가 되지 않아 다시 연락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신고인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11.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1.11.12. CCTV는 열람 청구한 시점에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보주체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에 해당하므로 감경사유로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보호법 제35조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1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호)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호)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 (고시 제3조제7항 별지 9호)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1항에서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4항에서 (2호)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호)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열람 청구 당시에 열람대상 영상정보가 보유기간 도대로 이미 삭제되어 열람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열람 거절에 해당하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환자정보 접속기록과 진료차트 수정내역은 피심인의 서면 청구 안내에 따라 신고인이 열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5조제4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	류의	부과기	주 '	ול כ	변기	주	>
_		1						

		과타	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위반	위반	위반
퍼. 법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9호	200	400	800

나.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1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금액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금액(A)	감경액 (B)	가중액 (C)	최종액(D) D=(A+B+C)
§35@	열람 거절 사유를 알리지 않음	200	△100	=	1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이 보호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11월 24일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19-283호 (사건번호 :)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도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1. 24.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하는 보습학원으로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개업일자	주요서비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 받은 공익신고에 대해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 조사(2020.9.15.~2020.9.24.)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12년경 수강생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아 수강생의 이름과 학교, 입시 결과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작하여 학원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때('20.5월)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게시하였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02.2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지 못해 블로그에 학생들의 이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으며, 관련 게시물은 삭제 조치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이하 '고시'라 함) 제10조제1항은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 (이하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원 홍보·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학원은 원칙적으로 학습자(수강생)가 퇴원하게 되면 수강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한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당시 상황에서 '학생들이 동의했을 목적과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학원의 홍보에 이용할 것을 가정하여 동의했을 것 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 강의를 수강했던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대부분 대학을 졸업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까지 게시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 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8년 이상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사유 없이 퇴원한 학습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장기간 삭제하지 않고 학원 블로그에 게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1. 일반기준

-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담당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위반행위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나.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태료 금역	액 (단위	: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가중액 감경액 최 : 금액(A) (B) (C) D=			
법 §21①	개인정보 미파기	600	5-	△300	3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2항제4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11월 24일

-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1-019-284호 (사건번호 :)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도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1. 24.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는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 표	설립일자	매출액(20년)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0. 9월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0.11.18.~ 2020.12.16.)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02년 3월부터 4대보험 관리, 연말정산, 경력증명서 확인 등의 목적으로 직원 명부를 수기로 관리하면서, 최초 신고일('20.10.28) 기준으로 보유기간 (근로기준법 상 3년)이 지난 퇴직자('18.10.29일 이전에 퇴사한 자)의 개인정보 165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②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05.2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지 못해 보유기간이 지난 근로자명부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파기를 완료하였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이하 '고시'라 함) 제1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자의 개인정보 165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중을 하지 않고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라. >

1. 일반기준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고, 위반행위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다. >

1. 일반기준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 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법 §21①	개인정보 미파기	600	-	△300	30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2항제4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위원장 윤종인 (서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홍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1-019-285호 (사건번호 :)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시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1. 11. 24.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피심인의 현황

피심인 보험업법에 따라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 표	설립일자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21.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조사(2021.3.31.~ 2021.04.09.) 및 관련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피심인은 '15.1월 개인정보 삭제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 가입설계 고객*의 개인정보를 삭제 대상에서 누락하여, '15.1월 ~ '18.4월 기간 중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받은 87,765건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보험상품 가입설계만 진행되고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위원회는 2021.05.2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파기 누락 된 개인 정보는 확인된 시점에 즉시 파기하였고, 프로그램 변경 등 개선을 완료하였음. 아울리, 회사 내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 법령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이하 '고시'라 함) 제10조제1항은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법성 판단

보유기간이 지난 보험 가입설계고객의 개인정보 87,765건을 파기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4호	600	1,200	2,400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 다.에 따른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1. 일반기준

- 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태료의 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1.나.에 따른 기준금액의 25%인 150만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 나. >

1. 일반기준

- 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이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의 근거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위반내용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법 §21①	개인정보 미파기	600		△ 150	450

□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과태료)제2항제4호에 의한 과태료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1년 11월 24일

- 위 원 장 윤 종 인 (서 명)
 - 부위원장 최 영 진 (서 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